

전자자금이체상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UCC와 UNCITRAL Model Law 중심으로-

A Study on Problems and Implication of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Focused on the UCC and the UNCITRAL Model Law-

김종철(Jong-chill Kim)*

신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이병렬(Byeong-ryul Lee)

경제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목차

- | | |
|--------------------------|-----------------------------------|
| I. 서론 | IV. 전자자금이체의 권리와 의무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
| II. 전자자금이체와 각국의 입법내용 | V. 결론 |
| III.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권리와 의무관계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itical issues on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between Article 4A of the UCC and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of UNCITRAL. The electronic fund transfers begin with the issue of the payment order by the originator to the receiving bank for the beneficiary. Al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es concerned occur when the receiving bank accept the originator's payment order to executes.

So far, some the most compell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electronic fund transfer in Korea.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some problems of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fund transfer from Article 4A of UCC and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of UNCITRAL. And also we present some Implications to reform EFT Law

* 주저자임

for the efficient application.

Key Words: Electronic Payment, 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UCC, UNCITRAL

I. 서론

국제무역거래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방식이 도입됨으로서 계약 및 통관, 국제 물류분야 등에서 획기적인 업무의 개선을 가져왔다. 이제는 그 영역이 무역결제분야로 까지 확대되어 EDI를 통한 전자결제방식은 조금씩 적용되고 있다. 즉, 국제간의 대금결제는 업무의 효율화, 신속화 그리고 비용절감의 이점을 가진 새로운 전자적인 금융수단에 의존하게 되었다. 종래 국제무역에서 신용장부 화환어음결제의 경우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면서 환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 그리고 상업송장 이외의 많은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수출입 관련 당사자들은 서류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했다. 또한 무역결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은행들은 서류심사와 같은 서류처리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결국 결제의 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국제무역의 분쟁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EDI를 결제업무에 적용시킬 경우 이와 같은 서류들을 그대로 데이터 전송을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축소 또는 간소화하여 전송할 수 있다. 특히 EDI를 이용한 결제방식은 데이터의 전송의 신속화, 종이문서의 감소, 반복적인 컴퓨터입력의 간소화와 이에 따른 에러의 축소, 물품수요에 대한 신속한 반응, 시장형성시간의 단축 그리고 결제비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무역거래비용이 삭감되어 관련당사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규모의 은행들은 국제적인 자회사 또는 해외지점에 메시지를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한 자체 통신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실제은행의 결제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네트워크는 국제금융의 자유화가 진전되고 은행업무가 폭주하기 시작한 1970년 대부터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의 형식으로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일은행 또는 환거래 약정(코레스)을 체결한 은행간 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시스템은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급속히 보급되어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10월 현재 일평균 미화 1조5천억 달러를 결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국은 1984년부터 정산소 자동결제시스템(The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 CHAPS)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88년에 일본은행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은행간 자금이체를 하고, 한국은 1994년 한국은행 금융망(BOK-Wire)을 통하여 금융기관간 거래자금을 전자이체하고 있다. 특히 EU는 범유럽자동실시간 전자자금이체시스템

(Trans-European Automated Real 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을 구축하고 있으며 UN에서도 표준법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미에서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제도가 상당히 진전되어 감에 따라 한국도 머지 않아 국내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자자금이체가 대금결제관행으로 정착되어 그 이용이 확산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가령, 미국의 소비자간 전자자금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 UCC 제4편, 국제간의 자금결제를 위한 UNCITRAL의 국제지금이체에 관한 표준법(Model Law on Interantional Credit Transfers, 1992)은 선행적으로 적용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제로 마련한 법률로는 미국의 UCC 제4편(Article 4A)과 1992년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AL)가 국경을 초월한 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한 통일법으로서 국제지금이체에 관한 표준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제는 당분간 전자자금이체의 입법을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¹⁾. 이러한 제정을 바탕으로 Baxter & Bhala, 1990는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무권한 지급지시와 지급지시 과실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미국의 Dole(1995)은 미국통일상법 제4편과 UNCITRAL 국제지금이체에 관한 표준법을 비교분석하였다²⁾. Geva(1998)와 크리닉(Krinick, 1999)은 UCC 제4편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례중심으로 분쟁 유형과 판정결과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규명하였다.

국내에서는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와 소비자간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리적인 관점에서 연구(정경영 1994, 손진화, 1990)와 전자자금의 이체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관계를 지급지시의 전송과 지급지시의 이행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연구(강원진·이병렬, 2002)가 선행적으로 있었다. 그 외에도 정진세(1995)는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책임분담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전자자금이체에서의 이행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당사자의 법률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국내연구의 경우 간헐적으로 권리와 의무관계 중심으로 논의된바 있어서 적용상의 문제점과 국내입법이 머지 않아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국내에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시사점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은 UCC와 UNCITRAL 표준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강원진·이병렬,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2.6, p.26.

2) Richard F. Dole,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 *Tulsa Law Review*, Vol.69, 1995.

II. 전자자금이체와 각국의 입법의 내용

1. 자금이체 시스템의 전자적 대체

자금이체 시스템은 종래의 종이문서에 의한 전통적인 결제수단에서 이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송되는 지급지시에 의한 자금이체로 변화되었다. 은행이 EDI에 의한 데이터를 전자적 송수신을 함으로써 국제자금이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은행들은 자행의 자금을 서로 보유하고, 은행간에 전자자금이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수출자 측에서 종이문서를 이용한 종래의 결제시스템에서 수입자에 의한 자금이체지시로 변화하고 지급에 관한 정보는 수입자로부터 수출자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각국의 입법동향 및 내용

컴퓨터네트워크에 의하여 자료가 송수신되고,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전자결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법률 적용하는데는 한계점과 기존의 법과의 충돌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상거래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미 1978년에 연방차원에서 소비자간 전자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of 1978; EFTA)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규칙 E(Regulation E)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80년대 전자자금이체가 국제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1989년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4편에 자금이체라는 법을 추가하여 상업적 또는 기업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³⁾. 미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10여년 앞서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은행의 업무에 도입하였으며, 그 후 관련법을 제정하여 해당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는 전자자금이체카드의 발행 및 사용을 규정하는 실무법전을 마련하였으며, 덴마크는 지급카드법, 오스트레일리아는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권고절차의 형식으로 전자결제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도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⁴⁾

한편 개별국가차원에서 입법을 준비하는 것과는 별도로 UN에서도 유엔/유럽 경제위원회의

3) 朝岡良平, "EDIにおける資金移替に関する研究", 『國際商務論の諸問題』, 同問館, 1998, p.128.

4) 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2, pp.21-31.

무역절차 간소화 작업부(UN/ECE. WP.4)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업계의 표준서식, 데이터항목에 관한 용어법의 통일, 업체간의 범용표준 및 국제적인 EDI를 위한 문장규칙 등의 국제표준을 작성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WP.4는 법률가들을 임명하여 법규의 정비에 관한 작업을 개시하였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도 전통적인 종이서류에서 전자적 자금이체시스템으로 이행(移行)되는 경우에 직면하는 법률적 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1986년 제19차 회기에서 전자 자금이체에 관한 표준 규칙초안의 준비를 위하여 이 작업을 실무작업반에게 맡겼다. 이에 따라 실무작업반은 1987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지침(UNCITRAL 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A/CN.9SER.B/1, Sales No.E.87.V.9)을 마련하였다. 이 법률지침을 근거로 1991년 제24차 회기에 초안을 작성하여 심의에 상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국제지금이체에 관한 표준법초안을 채택하였다. 최종 검토를 마친 이 표준법초안은 1992년 뉴욕의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제25차 회기에서 심의를 거쳐 유엔 국제 무역법위원회의 국제지금이체에 관한 표준법으로 최종 결정되었다.⁵⁾ 이 표준법은 전체 4개장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이고 제2장은 당사자의 의무, 제3장은 자금이체의 불이행, 착오 또는 지연의 효과, 제4장은 지급이체의 종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는 1993년부터 전자상거래를 규율할 목적으로 EDI를 위한 표준법의 심의를 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50 여 개국과 10 개의 국제 기구가 참가한 1996년 제29차 총회에서 결의안 51/162에 의하여 지난 4년 동안 상정되어온 두 번째 국제 법률을 채택하였다.⁶⁾ 이 결의안은 상거래에서 컴퓨터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통신의 합법성과 속성 그리고 효력에 관한 기초적인 틀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 표준법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편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고, 제2편은 특정 분야의 상거래에 대한 다수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법의 해석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규정들을 제외하고, 제1편의 대부분의 규정들은 두 가지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그룹은 1조부터 9조까지인데 그 중 5조와 9조는 상거래 활동에서 사용되는 전자 메시지의 정당성과 유효성 그리고 증거성 등이 표준법에 규정된 기준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10조는 정보와 서류들이 전자 매개체에 의하여 보존, 검색되어 질 때 준수되어야 할 요건에 대한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2그룹은 10조부터 15까지는 위험의 평가와 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표준 및 통신 대리인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2편의 16조와 17조는 물품들과 운송관련서류들의 전송과 관련한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특히 17조는 전자선화증권이 해상운송 이외에 다른 형태의 운송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다.

5) A/47/17, UNCITRAL YEARBOOK, Vol. XIII: 1992(N.Y UN, 1994), Annex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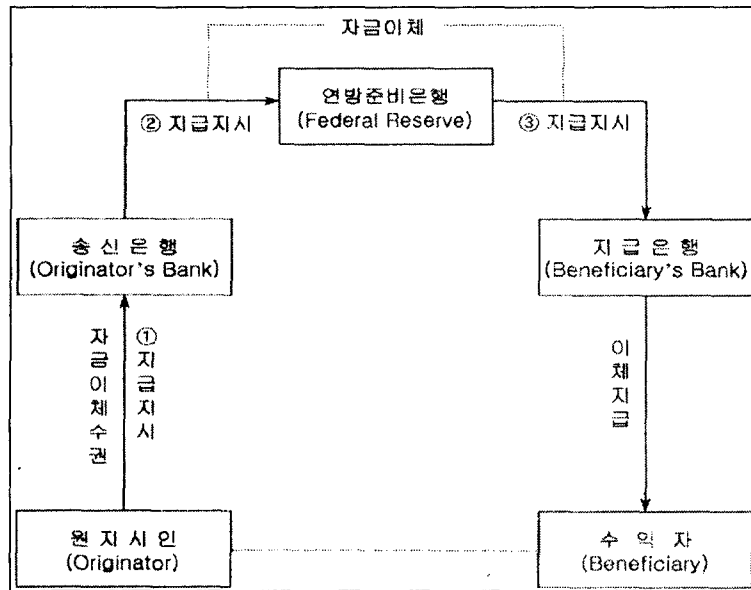
6) 유엔 국제무역법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자자금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992년 국제 지급이체에 관한 표준법의 완성이었다.

7) Harold S. Burman, "Introductory Note,"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January 1997.

3. 전자자금이체 메카니즘

FedWire을 통한 기업간의 전자자금이체 다음과 같은 이행 메카니즘에 따라 이행된다. 대개 전자자금이체는 전체 3개의 지급지시의 전송으로 진행되는데 지급지시를 수신하여 이행하는 당사자는 수신은행이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는 크게 원지시인(Originator), 수신은행 그리고 수익자(Beneficiary)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중에서 지급지시를 전송하는 수신은행 중 특히 송신은행(Originator's Bank)은 지급지시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지급지시의 금액을 수익자에게 이체지급하는 지급은행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행은행(executing bank)이라 할 수 있다⁸⁾. 그리고 당사자 구별없이 지급지시를 전송하는 모든 당사자는 전송자가 된다⁹⁾.

<그림 1> 전자자금이체 메카니즘



자료 : Ronald J. Mann. *Payment Systems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Aspen Publishers, Inc., 1999, p.163.

전자자금이체의 시작은 제일 먼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로 개시된다. <그림 1>에서 원지시인은 송신은행에게 지급지시를 전송한다. 이때 원지시인이 전송하는 제1의 지급지시를 송신은행에게 원지시인의 지급지시금액을 위임한다는 법률적 권리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이체수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이체수권을 받은 송신은행은 원지시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연방준비

8) 미국 통일상법전 제4A에는 “이행”이라는 용어를 지급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UNCITRAL Model Law에는 수익자에 대한 지급은행의 이체지급 역시 지급지시를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UCC § 4A-301(a), UNCITRAL Model Law § 2(1)

9) 지급지시의 전송자는 원지시인, 송신은행, 중개은행, 지급은행이 포함된다.

은행에 제2의 지급지시를 전송한다. 연방준비은행은 송신은행의 지급지시를 수신하여 후속의 수신은행인 지급은행에게 지급지시를 전송한다. 송신은행의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지급지시와 연방준비은행의 지급은행에 대한 지급지시를 자금이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이체를 수신받은 연방준비은행은 지급지시를 연결하는 중개은행으로서 행동을 하게 된다. 만약 지급은행이 중개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 계정을 갖고 있다면 연방준비은행은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지급은행의 FedWire의 접속망에 전송하고 동시에 지급지시의 금액만큼 수익자의 계정에 이체 지급한다. 지급은행의 이러한 이체지급으로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채무는 변제되며 전자자금 이체도 종료된다.

III.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

1. 원지시인과 원지시인 은행(송신은행)간의 권리의무

전자자금이체는 의뢰인인 원지시인(originator)이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신은행에게 지급지시를 전송함으로써 시작된다. 따라서 원지시인이 전송한 지급지시의 효력발생이 전자자금이체를 이행시키는 선결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지시(payment order)는 전송자가 수신은행에게 일정액 또는 확정 가능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발행하는 지시를 의미한다¹⁰⁾.

원지시인은 지급지시를 송신하고, 원지시인의 은행(originator's bank)인 송신은행은 이 지급지시를 수신한다. 이때 송신은행은 수신된 지급지시를 송신할 의무가 발생한다¹¹⁾. 송신은행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수신할 때, 원지시인이 지시한 금액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권리는 해당은행에 있는 원지시인의 계좌의 차변에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은행이 행하는 자금이체는 당사자간에 서명된 정식의 문서에 의한 어떤 종류의 협정 또는 약속에 의해서 실행된다. 그러나 협정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송신은행은 지급지시를 받을 때까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에 관한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송신은행이 수익자의 은행으로 지급지시를 할 경우 송신은행은 원지시인을 대신하여 지급지시를 수익자의 은행에 송신할 의무를 지닌다. 송신은행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수익자의 은행에 전송하기 위해 중간은행에 있는 수익자의 계정 대변에 지급금액을 기입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행한다.

10) UCC § 4Q-103 : UNCITRAL Model Law § 2(e)

11) UCC § 4A-301(a)

송신은행이 의뢰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수익자의 은행에 지급한 금액만큼 원지시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원지시인의 은행인 송신은행에 있는 의뢰인의 계좌 차변에 지급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행해진다¹²⁾. 수익자의 은행에 지급지시를 송신하기 위해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실행하는 중간은행에 대해서 송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받았을 때 송신자는 지급지시에 따른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원지시인의 은행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실행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은행에서 지급지시를 받은 중간은행도 동일한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의뢰인의 은행 또는 거래은행은 의뢰인의 지급지시에 표시된 수익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지시를 행한 경우 지급지시를 잘못 송신받은 은행은 실행된 지급지시에 기재된 금액을 수령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에 송신한 자는 잘못 지급된 금액을 잘못 지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잘못된 지급지시에 대한 지급의무를 가지지 않는다¹³⁾.

원지시인은 수익자의 은행 이외의 은행에 지급지시가 되어 본래의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수익자의 은행에 대한 지급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 송신은행이 의뢰인의 지시로 지정된 중간은행에 지급지시를 송신한 경우, 중간은행에 의해 발생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의뢰인의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은행이 의뢰인의 은행으로부터 송신된 지급지시를 행하지 않거나 원수익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지시를 행한 경우, 의뢰인의 은행은 원수익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의뢰인은 지급지시에 대한 상환의무를 가지나 중간은행에서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¹⁴⁾.

2. 수익자와 수익자의 은행(지급은행)간의 권리의무

수익자의 은행인 지급은행에 지급지시가 송신되면 지급은행은 이 지시를 수신하자마자 지급금액을 지급은행에 있는 수익자의 계좌 대변에 기입하며 지시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익자의 은행은 지급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지급지시에 관한 책임은 없다¹⁵⁾. 지급지시가 송신은행과 수익자의 은행간에 존재하는 한개 이상의 중간은행을 통해 실행되는 경우, 중간은행에 의해 이체되도록 송신된 지급지시를 수익자의 은행이 받을 때에 수익자의 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의 은행은 지급지시를 받은 때, 무조건 수익자에게 지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은행은 지급지시의 수령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지급은행이 지급을 수령한 때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지시의 수령을 수익자에게 통지한 때에 수령이 확인된다¹⁶⁾.

12) UNCITRAL Model Law Article 5(6)

13) UCC § 4A-303, 4A-207

14) UCC § 4A-402(e)

15) UNCITRAL Model Law, Article 7(2), 9(1)

그러나 수익자의 은행은 수신된 원지시인 또는 자금이체의 송신자에 대한 책임은 가지지 않으며 또한 수익자 은행이 수익자 이익을 위해 지급지시를 수령하지 않았을 때에도 면책이 된다.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데이터가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수신은행은 송신자에게 그 문제에 관한 통지의무가 있다¹⁷⁾.

자금이체에 관한 송신자의 지급지시의 목적은 의뢰인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며, 수익자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수신한 때에 달성된다¹⁸⁾. 이러한 경우 수신은행이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의무가 부가된 지급지시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수신은행은 수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¹⁹⁾.

수익자의 은행 이외의 은행이 지급지시를 수령한 때에는 잘못된 부적절한 지시를 한 은행은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²⁰⁾ 지급이 중지되거나 불법으로 강제되는 경우, 수신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 국제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지연이 발생할 때도 있지만 의뢰인, 수익자에게 무엇이 발생하였는지 판명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때에는 수신은행은 의뢰인을 도와 대금이체에 관한 은행업무를 조사해 보기 위해 수신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²¹⁾.

IV. 전자자금이체의 권리와 의무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전자자금이체 당사자간에 야기되는 실행상의 문제점을 사례분석과 함께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입법시 검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전자자금이체 실행상의 문제점

1) 지급지시의 무조건성과 지급보증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 서류에 바탕을 둔 결제방식에 비하여 가지는 큰 장점 중 하나는 결제의 신속성 및 결제과정의 단순성이다. 전통적인 결제방식에서는 결제와 관련된 서류의 수령을

16) UCC Article 4 A, Prefatory Note, 1990.

17)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Uniform Law Review*, 1992.11, p.21.

18) UCC § 4A-405

19) UCC § 4A-305

20) UCC article 4A, Prefatory Note, 1990.

21)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1992.11, p.21.

조건으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의 도착이 종종 지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약정된 시점에 결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되어 당사자간에 비용분담의 문제로 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자금이체에서는 전자통신시스템에 의한 사이버(cyber)상에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제의 지연문제는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원인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이 지급지시의 무조건성(Unconditional Payment Order)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은행간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제인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에서도 「지급지시는 지급시기 이외에 수익자에 대한 지급조건을 명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²²⁾하여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전자자금이체에서도 결제의 신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급지시가 무조건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지시인이 지급지시를 전송함에 있어 특정한 부가조건 없이 지급지시의 전송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급지시의 전송과정에서 부가조건을 명시하면 종이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결제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뉴욕의 은행은 뉴욕에 있는 자행의 고객에게 물품을 보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출업자를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은 물품의 적출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을 조건으로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것이다. 뉴욕의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에 지급대리인인 캘리포니아의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신용장상에 명기되어 있다. 만약 뉴욕은행은 캘리포니아의 은행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면 뉴욕의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 지시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물품의 적출을 증명하는 서류의 수령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지시가 조건부인 경우에는 미국통일상법전 제4A편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캘리포니아의 은행이 수익자인 수출업자에게 지급지시에 따라서 지급하고 캘리포니아의 은행에 대해서 뉴욕은행이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한다면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송금조건을 만족하는 동편의 적용을 받게 된다.²³⁾ 즉, 뉴욕의 은행이 캘리포니아의 은행을 수익자로 지명하는 FedWire(미연방준비은행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 의해 보증의무를 이행한다면 수출자가 아닌 캘리포니아의 은행에 지급되어진다. 이 지급은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기 전·후에라도 지급을 이행할 수 있다. 즉, 지급보증여부가 지급지시의 무조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전자자금이체시스템에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22) UCC § 4A-103(A)(i)

23) 朝岡良平, 전제서, pp.132-133.

2) 수권되지 않은 지급지시

전자이체과정에서 지급지시의 수권(authorized)이란 지급지시의 전송자로서 확인이 되었거나 또는 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대리인으로 구속된 자가 전송하는 지급지시이다.²⁴⁾ 수권되지 않은 지급지시(unauthorized payment order)는 종종 사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수신은행은 지급지시인으로부터 송신되어온 전자메세지가 수권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지급지시의 수권은 전송자와 수신은행간의 이미 체결된 주 계약에 바탕을 둔 은행거래에 기초하여 채권채무자로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대리계약에 의하여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자가 전송하여야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수권이 입증되지 않은 지급지시는 불법거래로서 범죄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사기성이 있는 지급지시일지라도 수권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Community Bank v. Stevens Financial Corp. 사건²⁵⁾에서 법원은 원지시인이 수익자와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을 위반하여 지급지시를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권된 지급지시라고 판시하였다. 전송자로서 확인된 사람이 수신은행에게 수권된 지시를 전송하면 수신은행은 비록 해당지급지시가 결과적으로 사기성 있는 지급지시일지라도 정상적인 지급지시로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수권된 지급지시에 대한 결정은 전송자와 수신은행간의 전통적인 은행거래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수익자는 수권여부를 결정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만족되어 져야 한다.²⁶⁾

- (a) 통일성의 확인 : 메시지에 표시된 사람이 동일한지 여부의 문제
- (b) 권한의 확인 : 메시지의 송신자가 발주 등의 권한여부의 문제
- (c) 메시지의 완전성 : 도달한 메시지가 송신한 것과 동일성여부의 문제
- (d) 수신확인 : 메시지가 틀리지 않게 도달여부의 문제
- (e) 미사용 데이터가 있는가의 확인 : 전자메세지의 복잡성 문제

3) 내용입력의 오류

전통적인 무역결제시스템은 여러 당사자가 결제과정을 관여하여 결제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은 종이에 의한 결제방식과는 다르게 결제과정이 단순하다. 따라서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결제과정에서의 착오 및 오류는 그대로 전송이 되어 종종 당사자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전자자금이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착오의 유형에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²⁷⁾ 첫째, 중복 지급지시

24) UCC §4A-202

25) 966 F.Supp 775, 786(ND Ind. 1997)

26) 八尾 晃, 『國際取引と電子決済』, 東京經濟情報出版社, 1997, pp.161-163.

27) 상기의 본문은 1989년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의 내용이며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는 착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인 경우 둘째, 지시금액의 착오 셋째, 수익자 지정의 착오의 경우 등이다.

먼저 중복지시 및 지시금액의 착오는 지급지시인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송신은행에게 더 많은 금액 또는 중복으로 지급지시를 전송하는 등과 같은 지급지시상의 과실을 범한 경우이다. 이 때는 해당 지시에 포함된 내용은 송신은행에게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급지시인은 그의 지급지시상의 과실로 비롯되는 손실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²⁸⁾

해당 과실에 따른 책임분담의 원칙은 지급지시인이 범한 자체의 과실뿐만 아니라 지급지시인이 지정한 중개은행 및 중개기관인 통신시스템의 과실에도 적용된다. 즉, 지급지시인은 그가 지정한 통신시스템이 이중으로 수신은행에게 지급지시를 전송하였을 경우에도 이중지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지시인은 지급지시의 전송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지급지시인의 지급지시의 착오가 착오발견을 위하여 수신은행과 약정한 보안절차에 따라 전송되었다면 지급지시인은 그 지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수신은행이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지시인의 의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과실 및 원상회복을 규율하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회수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과소 금액으로 지급지시를 이행한 경우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문제는 다음과 같다.²⁹⁾ 첫째, 송신은행이 적은 금액을 전송하여 이행위반을 한 이후 수익자를 위하여 이행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급지시를 전송하였다면 송신은행은 지급지시인의 최초의 지급지시의 금액을 수신할 권리를 가진다. 둘째, 송신은행이 착오로 지급지시인의 지급지시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이행한 이후에 착오금액을 정정하지 않았다면 수신은행은 지급지시인으로부터 수신한 해당금액을 지급지시를 이행한 금액범위내에서 수신 또는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나머지 차액금액을 지급지시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둘째, 수익자의 지정에 따른 착오를 살펴보면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에서는 지급지시의 수익자는 '이름', '은행계정번호', 또는 '다른 사항'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이에 따라 지급지시인은 지급지시를 전송함에 있어 수익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은 오히려 수익자를 판별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게 됨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급지시인은 수익자를 지정함에 있어 존재하지 않은 인물을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수익자 명의나 계정번호 그리고 기타 다른 확인사항을 불일치하게 지정할 수가 있다.³¹⁾

규정하고 있다. 첫째, 무권한 전자자금이체 둘째, 소비자 계정으로부터 또는 그 계정에 대한 부정확한 전자자금이체 셋째, 소비자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자금이체로서 정기적인 거래명세서에 포함 되어야 할 이체의 누락 넷째, 금융기관에 의한 계산상의 오류 다섯째, 전자단말기로부터의 소비자의 부정확한 금액의 수령 여섯째, 전자자금이체 또는 본 편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록에 관한 추가정보·명세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일곱째,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오류 등이다; EFTA §908(f).

28) David E. Teitelbaum, "Developments in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Benefit Transfer Systems," *The Business Lawyer*, May 1994, pp.1360-1361.

29) UCC §4A-303

30) UCC §4A-207

먼저 지급지시인은 지급지시를 전송함에 있어 미존재, 미확인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전송할 수 있다. 지급지시인은 지급지시를 전송할 때 적어도 한사람이라도 확인할만한 수익자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급지시인은 지급지시상에 수익자명의 입력에 관하여 과실을 범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서 지급지시인이 수익자명리에 따라 수익자를 지정할 경우 수익자명리를 부정확하게 지정함으로써 수신은행이 착오로 지급지시를 정확히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관한 책임도 지급지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³²⁾ 또한 지급지시인이 전송한 지급지시는 수익자명과 그 계정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한다면 지급지시에서 해당수익자를 지정하는 내용이 애매할 경우 전송자에게 조회하여야 하며, 중요한 것은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명확한 적용기준이 필요하다.

4) 당사자의 책임부담한계

전자자금이체의 처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따른 손실분담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용자·금융기관·통신사업자의 어느 쪽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위험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³³⁾ 그러나 현존하는 전자자금이체 관련법에서는 불가항력사건에 대비한 보험부보와 관련한 어떠한 조항도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약관에 의존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고객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 정비를 새롭게 하고, 위험부담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 금융기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보상금액의 상한이 필요)이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5) 재판관할권

전자결제시스템은 사이버(Cyber)상에서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특히 전자자금의 이체는 그 특징상 적어도 한 개 주(연방국가인 경우) 또는 하나의 국가이상의 법을 어길 수 있어 재판관할권을 규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미국의 예를 들면,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의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두 개 주에서 컴퓨터에 무권한적인 접근을 행한 결과가 된다. 그리고 컴퓨터에 무권한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실질세계에서의 가정이나 기업에 침입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결과를 가져온다.

31) Thomas C. Baxter, Raj Bhala, "The Interrelationship of Article 4A with Other Law," *The Business Lawyer*, Vol.45, June 1990, pp.1498-1501.

32) Evan H. Krinick, "UCC Article 4A Holds in Answers to Disputes That May Arise When There is an Errors in an Electronic Funds Transfer," *The Banking Law Journal*, Vol.116, June 1999, p.468.

33) (財)金融情報システムセンタ, 「アジアにおける貿易金融EDI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1997, pp.29-32.

미국법정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해당사건이 순수한 국내문제인가, 아니면 국제적인 문제인가에 상관없이 이중처리기준(due process standards)을 적용해 오고 있다. 즉, 여기에는 일반(general)재판 관할권과 특정한(specific)재판 관할권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소송이 일반재판 관할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특정한 재판관할권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일반 재판관할권의 적용기준은 전자자금이체거래가 실제적이며,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거래가 발생하여야 하며, 거래가 일어나는 해당 주와 실제적인 관련(substantial contacts)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재판관할권의 적용기준은 이보다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Burger King Corp. v. Rudzewicz* 사건³⁴⁾의 경우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비 거주피고인이 법정지 주에서 그의 활동이 영업거래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이들 활동이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특정한 재판관할권을 적용할 수 가 있다.

재판관할권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거주자에 대한 일반재판 관할권 적용의 경우이다.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은 거주지주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 그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주의 법정이 그 주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일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과 법인을 거주자여부에 관한 사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쉽다. 즉, 개인이 살고 있고, 투표하고 일하는 곳이 거주지이다. 그러나 법인은 여러 주에서 거주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조직되어 있거나 영업(계속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곳)을 하는 주들은 모두 거주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텍사스에 소재하는 기업은 텍사스가 거주지가 될 수 있고, 달리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나 지점사무실도 거주지가 될 수 있다. 거주자들은 클레임이 발생하면 거주지법정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주자에 대해서 일반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영업활동이 법정지주(forum state)와 '실제적 관련'여부와 관계가 있다. 거주자의 영업행위가 법정지 주와 실제적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거래가 일시적이지 아니고 계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Keeton. v. Hustler Magazine, Inc 사건³⁵⁾에서 법정은 동일한 주 내에 15,000개나 되는 잡지사가 존재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일반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법정은 이러한 잡지사들에게 일반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영업활동이 해당 주와 실제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정지주 내에서 주요한 영업장소를 유지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비거주자에 대한 특정한 재판관할권의 적용의 경우이다.

International Shoes Co. v. Washington 사건³⁶⁾에서 비 거주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주에서 최소한의 관련(minimum contacts)만 있다면 개인적 재판관할권은 행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최소한의 관련'에 대한 문제는 법정지주와 피고인의관계, 공정한 거래를 했는지에

34) 471 U.S. 462 (1985)

35) 465 U.S. 770 (1984)

36) 326 U.S. 310 (1945)

대한 전통적인 개념의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적 재판에서 결정되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Burger King Corp. v. Rudzewicz* 사건³⁷⁾에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개인적 재판관할권은 현재 그 주 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정지주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와 관련이 있으면 행사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의 사건이 '최소한의 관련'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행사여부와 관련하여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Resolution Trust Corp. v. First Of America Bank* 사건³⁸⁾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지역 지역법원(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of California)은 국립 자동정산시스템을 통하여 법정지주 내에 있는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비 법정지주에 소재하는 은행에 대한 개인적 재판관할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리졸리션사'는 캘리포니아 법정에 이 미국 미시간 제일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의 원인이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 제일은행의 최소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이 그 은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은 이 사건은 거래에 있어서 '불충분한 최소한의 관련(Insufficient minimum contacts)'이라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미시간 제일은행은 캘리포니아에 어떠한 사무소, 지점, 직원 그리고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영업하기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에게 영업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국제거래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적용의 경우이다.

주권국가간에 재판관할권의 실행이나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조약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적 재판관할권에 대한 규칙도 미국의 해당 주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미국법정이 규율한다. 외국피고인들도 미국에서 영업거래나 불법행위의 실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 때문에 미국에서 기소될 수 있다.

Corporacion Salvadorena de Calzado, SA v. Injection Footwear Corp 사건³⁹⁾에서 보듯이 미국시민이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그 국가의 재판에 그 자신이 체소하기만 하면 이 국가에서 이 국가의 법정이 미국시민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유럽사람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소유자의 허락 없이 스웨덴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거래기밀, 은행계정을 다운로드를 받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유럽사람은 미국법정에 기소될 수 있다. 동일하게 만약 미국시민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컴퓨터 터미널에 앉아서 유럽컴퓨터에 침투하여 거래기밀을 훔친다면 그도 역시 유럽의 재판에 기소될 수 있다.

37) 471 U.S. 462 (1985)

38) 796 F. Supp. 1333(C.D. Cal. 1992)

39) 533 F. Supp. 290 (S.D. Fla. 1982)

2. 시사점

정보통신의 발달은 전통적인 폐쇄형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한계를 초월하여 개방형 전자결제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즉, 그 동안 전통적인 무역결제시스템이 가졌던 절대적인 지위를 전자결제시스템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이 개방형 결제시스템으로 발달하여 기업과 은행, 은행과 은행, 은행과 공공기관간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자유로우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신뢰성을 가진 국제대금결제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상거래는 격지간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판관할권의 문제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간에 명확한 경계가 없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법의 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하며, 각국은 유엔의 표준법을 참조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입법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급지시(고객)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 세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규율하는 법 중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간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표준법에서는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에서 볼 수 있는 소비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물론 미국에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는 고객이 거액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⁴⁰⁾ 즉, 지급지시를 전송하는 지급지시인이 주로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로서 지급지시를 이행하는 수신은행과 동일한 경제적 강자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기업들 중에는 상당부분 중소기업들이다. 보편적인 결제관행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신뢰성을 받아야 한다. 즉, 고객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관련법의 입법시에 두지 않으면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비록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참여도가 저하되어 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결제관행으로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이용자 즉, 최초의 지시인(원지시인)의 과실 및 부주의에 따른 책임한계를 보다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선진금융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이전에 출금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지시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결제시스템은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 이후에 원지시인의 해당계정에서 자금이 출금되지만 종종 수신은행의 과실 및 기타 사유로 승낙 이전에 출금이 되어 원지시인은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표준법에서는 수신은행이 지급지시의 승낙 이전에 원지시인의 계정에서 해당자금을 출금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지시인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할 경우 이점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0) 이병렬, 전제논문, pp.177-179.

셋째, 수신은행에게 비밀치성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야 한다. UN의 표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은행의 원지시인에 대한 지급지시의 거절, 비밀치성 및 불충분성과 관련한 통지의무를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에서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급지시를 승낙한 이후 이행결과에 따른 보고의무와 이행에 따른 조회의무만 두고 있을 뿐이다.⁴¹⁾ 이것은 수신은행의 법률적 책임 개시의 시점을 지급지시의 승낙시점 이후로 두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은 원지시인과 수익자의 채무변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거절과 비밀치성 또는 불충분성에 대한 수신은행의 통지는 원지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수신은행에게 이와 관련된 통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자결제시스템에 안전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을 문서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대체시킨 역할을 하였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얼마나 전통적인 대금결제과정에서 문서작업을 줄였는가 하는 대표적인 예는 자금결제과정의 전자변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의 전자변환(electronic variants)은 자금결제에서 중요한 4가지 부문에서 절차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① 은행 내 고객의 지급지시를 처리하는 과정 ② 해당지급지시를 후속 은행에게 전달하는 과정 ③ 은행간, 고객들간 및 중개기관간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 ④ 수익자가 대금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원지시인의 구체적 요구사항과 일치되게 물품을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제시의 과정을 줄임으로써 결제처리 시간 및 비용을 단축시켰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은 특히 국제무역에서 거래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결제시스템은 이러한 입증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류중심의 결제시스템이 오랫동안 국제상거래관습에서 확보하고 있는 미래예측성(predicta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이 부족한 것이 큰 단점이다. 이에 비하여 전통적인 결제시스템의 미래예측성은 시스템의 당사자들이 다양한 서류처리과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인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서류결제시스템은 이 시스템에서 발생한 손실에 따른 책임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완전히 확립된 법률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안정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금결제와 관련하여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에 있어 금융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결제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은 상거래에서 오직 자금결제과정에서의 책임만 부담할 뿐 시스템자체가 신용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무역결제시스템도 서류중심수단이 가지는 미래 예측성, 안정성 및 신용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41) Ernest T. Patrikis, "Article 4A: The New Law of Funds Transfers and the Role of Counsel," *UCC Law Journal*, Vol.23, 1991, pp.219-238.

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관련 법제와 UN의 표준법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국내 입법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UCC 제4편이 제정된 이후 전자자금이체를 통한 결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간의 결제에서는 서류에 기반을 둔 결제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UNITRAL의 국제지금이체에 관한 표준법의 제정은 국제간의 전자결제방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U가 범유럽자동실시간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준비중에 있고 UN총회에서 표준법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국제간의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법제의 출현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⁴²⁾.

본 연구결과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자금이체에서 결제의 신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급지시인이 지급지시를 전송함에 있어서 특정의 부가조건이 없이 지급지시의 전송 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신은행은 지급지시인으로부터 송신되어온 전자메세지가 수권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수권되지 않은 지급지시(unauthorized payment order)는 종종 사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자결제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지정된 수익자를 분별하기 위한 적용기준이 모호하다. 지급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계정번호 및 수익자명의 입력오류가 발생하여 수익자를 판단하는데 지급은행의 혼란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명확한 적용기준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자금이체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용자, 금융기관, 통신사업자간의 책임부담이 명확하지 않다.

다섯째, 전자자금이체가 사이버상에서 자금의 이동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법률에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쟁시 재판관할권을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사항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자자금이체에서 시스템이용자인 원지시인의 과실 및 부주의에 따른 책임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신은행이 지급지시의 승낙 이전에 원지시인의 계정에서 해당 자금을 출금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지시인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수신은행에게 비밀치성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이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한 이후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전자자금이체 관련

42) 강원진·이병렬, 전제논문, p.40.

입법을 완료하여 적용하거나 준비중인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을 제정하여 국제결제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가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원진·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의 수신은행의 역할”, 『e-비즈니스연구』, 제2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1.12.
- _____,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2.6.
- 김은기,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점”, 『상사법 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7.
- 손진화,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송선옥, “전자무역결제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6.
- 이병렬, 『기업간 전자자금이체에서의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정경영, “자금이체제도의 법적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정진세,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책임분담”, 『상사법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 金融情報システムセンタ, 『アジアにおける貿易金融EDIに関する研究會 報告書』, 1997.
- 八尾晃, 『國際取引と電子決済』, 東京經濟情報出版社, 1997.
- 朝岡良平, “EDIにおける資金移替に関する研究”, 『國際商務論の諸問題』, 同文館, 1998.
- Alces, Peter A., *Payment Systems*, West Publishing Co., 1993.
- Ballen Robert G. and Natalie H. Diana, “The Need for Article 4A,” *The Business Lawyer*, Vol.45, June, 1990.
- Baxter, Thomas C. and Raj Bhala, “The Interrelationship of Article 4A with Other Law,” *The Business Lawyer*, Vol.45, June, 1990.
- Burman, Harold S., “Introductory Note,”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January, 1997.
- Dole, Richard F.,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 *Tulsa Law Review*, Vol.69, 1995.
- Krinick, Evan H, “UCC Article 4A holds the answers to disputes that may arise when there is an error in an electronic funds transfer,” *The Banking Law Journal*, Vol.116, June, 1999.
- Littlefield, Neil O., “Payments: Articles 3, 4, and 4A,” *The Business Lawyer*, Vol.54, November, 1998.

Mann, Ronald J., *Payment Systems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a Division of Aspen Publishers, Inc., 1999.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Uniform Law Review*, 1992.

Patrikis, Ernest T., "Article 4A: The New Law of Funds Transfers and the Role of Counsel," *UCC Law Journal*, Vol.23, 1991.

Teitelbaum, David E., "Developments in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Benefit Transfer Systems," *The Business Lawyer*, May, 1994.

UNCITRAL Model Law, 1992.

UCC Article 4A.